

검 토 보 고 서

- 2000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 -

○ 2000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던중

'99. 12. 16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
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(안)이 접수되어

○ 금일 당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, 검토보고를 하게 됨.

○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◇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수 정 안	당 초 안	증 감	비 고
계	200,914,481	195,951,080	4,963,401	
일반회계	156,370,697	151,407,296	4,963,401	
특별회계	44,543,784	44,543,784	-	

1. 일반회계 세입재원

구 분	예 산 액			비 고
	수 정 안	당 초 안	증(△)감	
계	156,370,697	151,407,296	4,963,401	
○ 지방세	34,661,000	34,661,000	-	
○ 세외수입(2000년 사업시행 예정)	45,008,841	43,836,241	1,172,600	
- 6.25전쟁 50주년 안보관광기념품 판매대금	750,000	90,000	660,000	
- 녹슬은 철조망 판매대금	-	27,000	△27,000	
- 독개다리 관광열차 운행수입	472,500	-	472,500	
- 통일연못 무궁화 꽃 띄우기 수입	30,600	-	30,600	
- 평화의 종 타종수입	36,500	-	36,500	
○ 지방교부세	24,162,000	23,002,881	1,159,119	
○ 지방양여금	10,017,712	9,937,712	80,000	
○ 국고보조금	37,521,144	34,969,462	2,551,682	
- 국고보조금	18,935,050	18,271,158	663,892	
- 도비보조금	18,586,094	16,698,304	1,887,790	
○ 지 방 채	5,000,000	5,000,000	-	

-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항목중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
우리시의 형편에 따라 사업종류와 금액을 임의결정 할 수
있으나 나머지 양여금, 국도비보조금, 지방채등은 기 지정된
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일반회계 세출예산 ----- 5,495,376천원
(예산절감 531,975천원 포함)

- 국도비 보조사업 ----- 2,089,598천원
- 국고보조금 ----- 458,685천원
- 도비보조금 ----- 937,790천원
- 시비부담금 ----- 693,123천원

○ 자체사업 ----- 3,405,778천원

- 수정예산의 목적은 원래 국·도비 변경내시로 인한
계수조정이나 중요예산의 누락 또는 정책적으로 필히 반영
하여야 할 사항등 그 편성에 있어서 합당한 사유가 수반되
어야 할 것임.

-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(안) 세출내용을 살펴보면
상당부분이 사전에 예측가능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야
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, 수해방지에 따른 계속사업
시비부담금등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어 이번 수정예산안
에 올라오는 등의 매끄럽지 못한 예산편성은 아쉬운 부분이
라고 할 것임.

○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

6·25전쟁 50주년 기념 안보관광 기념품 디자인 개발과
관광열차, 만남의 장 조성, 통일연못 조성등 파주를 세계에
알리는 의욕적인 사업추진의 의지가 보이는 면도 있지만

○ 통신기계실 이전이라든가 운천3리 패키지마을 토지매입비
계상, 자랑스런 시민상 상패제작, 표창장, 바인더 구입비 삭
감, 전통민속놀이개최,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삭감등은
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되고 검토했어야 하는 사항
으로서 향후부터는 행정능률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
하다고 할 것임.

○ 또한 여성회관 방음장치 설치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
설계에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됨.

○ 나머지 6·25전쟁 전승조형물건립, 문산 내포리 체육시설공
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, 기능보강비,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
공사,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구입비등은 국·도비 지
원사업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○ 학술용역비중 어촌관광마을 조성용역비, 회유성 어종 산란
서식장 조성 용역비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
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.

○ 이번 수정예산안의 의회심사와 관련하여 제출기간이 촉박하
여 시간에 쫓겨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없이 심
의처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.

서면 답변자료

질문의원	박 해 룡	답변부서	문화체육과
질문제목	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숙박시설 대책		

☐ 질문요지

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?

☐ 답변내용

○ 제35회 추계 한국남여 고교축구연맹전과 관련하여 숙박시설로 모텔, 여관등 952실이 확보되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으나

○ 제1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숙박시설 부족이 예상됨으로서 아래와 같이 숙박대책으로

- 이미 확보된 모텔,여관등 952실(1실4인기준 3,808명 수용)
- 유일레저 방가로(500명 수용)
- 유일연수원(150명 수용)
- 흥은연수원(250명 수용)
- 포철구장 합숙소(50명 수용)
- 가든(100여개소, 2,000여명 수용)을 이용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

○ 지금부터 관련부서와 세밀한 검토 및 협조를 통하여 대회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

작성자 : 문화체육과장 박 제 홍

서 면 답 빈 서

질문의원	이 종 필 의원	답변부서	지적과
질문제목	무허가건축물 재산권 확보방안		

□ 질문요지

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많은 주민이 소유권 미확보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어, 재산권 확보방안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검토 방안은?

□ 답변내용

□ 현 황:

○ 건축물대장등재건축물현황

· 계 : 53,406동('99.11.30현재)

일반건축물 : 36,328동

집합건축물 : 17,078동

○ 재산세과세현황

· 건 수 : 52,116건

※ 재산세과세대장은 소유자물건이 한꺼번에 등재되나, 건축물대장은 건물동별로 기재가 되므로 건수의 차이가 생긴.

□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

1. 건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
2. 도시계획구역밖 2층이하 200㎡미만의 건축물이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는 경우(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)
3.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6조 및 제57조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
4.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·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

□ 무허가건축물 구제방안

· 건설교통부 건축 58550-2768('99.'7. 16)호에 의거 무허가건축물구제방안은 건축과에서 추진중에 있음.

· '99. 5. 9일 건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구역밖 2층이하 200㎡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의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착공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은 농지법, 산림법등의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을 시 작성.

※ 도시구역밖에서 2층이하 200㎡미만의 건축물을 건축시는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소유자가 임의로 건축을 하고 건축물대장이 필요치 않아 건축물 대장작성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 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현황파악에 문제점이 있음.

작성자 지적과장 남 상 균